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704
----------	-----

2022. 4. 25.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4. 13. / 김진희 의원 등 6명
- 나. 회부일자 : 2022. 4. 15.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 4. 2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9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을 증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문위원 증원(안 제5조)

기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

변경: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학철)

- 본 규칙안은 제9대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전문위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증원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최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면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가 당초보다 증원(18명→21명)될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할 있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붙임 :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1부.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의안 번호	704
----------	-----

발의연월일 : 2022년 4월 25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르면 우리시의회 의원 정수가 당초보다 증원(18명→21명)될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전문위원의 직급 변경

당초안: 지방행정사무관(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포함)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

수정안: 지방행정사무관(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포함) 3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안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3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전문위원) ① <u>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2인으로 보한다.</u> ② (생략)	제5조(전문위원) ① ----- <u>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3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u> -----. ② (원안과 같음)